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41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정화숙	690225-*****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화숙	2015.3.6. 체결한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보험업법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2. 22.(수) 14:00부터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다. 유의사항

-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회신이 없는 경우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o rla	당사자	성명('	명칭)							
Z. 3 [^]		주	소							
3. 의 견										
4. 7]	E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에는 별지를 실 수 있습니		실 수 있	 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함께			